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

주: 본 예시 양식과 내용은 참고용임

제 목: xxxx 샤워 젤 안전성 평가 보고서

허가인/등록인 명칭: xxxxxxxxx

허가인/등록인 주소: xxxxxxxxx

평가 기관: xxxxxxxx

평 가 자: xxxxx

평 가 일: xxxx 년 xx 월 xx 일

목차

1. 개요 4

2. 제품 소개 4

3. 제품 처방 4

4. 처방 중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6

5.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8

6.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10

7. 안전성 평가 결론 10

8.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 11

9. 안전성 평가자 약력 12

10. 참고문헌 12

11. 부록 12

1. **개요**

xxxx 샤워 젤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사용 시 몸, 손, 발에 바른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2021년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품의 미생물, 유해물질, 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처방에 사용된 물,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일용)향료,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소듐 클로라이드, 벤조산나트륨, 페녹시에탄올, 구연산 등 n 종 성분을 평가하였으며,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옥산, 페놀 등 n종 위험물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용 상황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1. **제품 소개**
2. 제품 명칭: xxxx 샤워 젤
3. 제품 사용 방법: xxxxx
4. 사용 대상: 일반인
5. 일평균 사용량(g/day): 18.67\*
6. 제품 체류인자: 0.01
7. 전신 노출량(SED) = 일평균 사용량 × 체류인자 × 처방 중 성분의 함량 비율 × 경피 흡수율 ÷ 체중#

주: \*일평균 사용량은 샴푸 용량을 참고했으며 데이터 출처는 “The SCC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12th Revision)”이다.

# 체중은 일반적으로 성인 체중(60kg) 기준이며, 경피 흡수율은 100%로 계산한다.

1. **제품 처방**

본 처방에 사용된 성분은 모두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또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이미 수록되었다. 제품 처방표는 표1을 참조하고 제품 실제 성분 함량표는 표2를 참조한다.

**표1 제품 처방표**

| **순번** | **중문명칭** | **INCI명칭/영문명칭** | **사용목적** | **“기사용 원료 목록”중의 순번** | **비고** |
| --- | --- | --- | --- | --- | --- |
| 1 | 물 | AQUA | 용매 | 06259 |  |
| 2 | 물 | WATER | 세제 | 06260 |  |
|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 COCAMIDOPROPYL BETAINE | 07555 |  |
| 소듐 클로라이드 | SODIUM CHLORIDE | 04517 |  |
| 벤조산나트륨 | SODIUM BENZOATE | 01289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 가능한 방부제(표4) 순번7 |
| 3 |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 모발 유화제 | 00681 |  |
| 4 |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 PEG-150 DISTEARATE | 증점제 | 00538 |  |
| 5 | (일용)향료 | FRAGRANCE | 세제 | 08782 |  |
| 6 | 페녹시에탄올 | PHENOXYETHANOL | 보습제 | 01294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 가능한 방부제(표4) 순번37 |
| ... | …… | …… | …… | …… | …… |
| n | 구연산 | CITRIC ACID | pH조절제 | 04849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제한 성분(표3) 순번37 |

**표2 제품 실제 성분 함량표**

| **표준 중문 명칭** | **INCI명** | **실제 성분 함량(%)** |
| --- | --- | --- |
| 물 | AQUA | xxx |
| (일용)향료 | FRAGRANCE | xxx |
|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 COCAMIDOPROPYL BETAINE | xxx |
|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 xxx |
|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 PEG-150 DISTEARATE | xxx |
| 소듐 클로라이드 | SODIUM CHLORIDE | xxx |
| 벤조산나트륨 | SODIUM BENZOATE | xxx |
| 페녹시에탄올 | PHENOXYETHANOL | xxx |
| …… | …… | xxx |
| 구연산 | CITRIC ACID | xxx |

1. **처방 중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1번 원료:** 물, 본 제품에 사용된 물은 화장품 생산용수 요건에 부합하여 안전성 위험이 없다.

**2번 원료:** 물,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소듐 클로라이드, 벤조산나트륨의 혼합물

물, 본 제품에 사용된 물은 화장품 생산용수 요건에 부합하여 안전성 위험이 없다.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2012년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가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처방에 감작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는(Rinse off)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5%-11%, 비염색 모발용(Hair - Non-Coloring) 제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2%-9%[4]다. 본 제품의 피부 감작성시험 결과는 “피부 감작성이 관찰되지 않음”으로 본 제품은 인체에 감작성 위험이 없으며 상세 정보는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해당 성분의 첨가량은 xxxx%로 본 제품에서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소듐 클로라이드, “기출시 제품 원료사용정보”에 따르면 머리에 사용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소듐 클로라이드의 사용량은 8.64%[3]다. 본 제품은 머리에 사용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으로 해당 성분의 첨가량은 xxx%로 본 제품에서 적용 범위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벤조산나트륨,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표4 화장품 사용 가능한 방부제 규정에 의하면, 벤조산나트륨 및 그 염류와 에스테르류의 사용 한도는 총량 0.5%(산으로 계산)[1]다. 해당 원료 중 투입된 벤조산나트륨 첨가량은 xxx%로 본 처방의 벤조산류 원료의 총 첨가량은 xxx%(산으로 계산)이며 요건에 부합한다. 본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3번 원료:**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2014년 CIR이 PEG-40 하이드로 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처방에 자극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07%-14%, 비염색 모발용 제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8%-22%[8]다. 본 제품의 급성 눈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이며, 급성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으로 본 제품은 인체에 눈과 피부 자극성 위험이 없으며 상세 정보는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해당 원료 중 투입된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은 xxx%로 본 처방의 총 첨가량은 xxx%다. 본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4번 원료:**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2015년 CIR이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처방에 자극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03%-33.2%, 비염색 모발용 제품에서의 사용 농도는 0.006%-4.5%[12]다. 본 제품의 급성 눈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이고 급성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으로 본 제품은 인체에 눈과 피부 자극성 위험이 없으며 상세 정보는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해당 성분의 첨가량은 xxx%로 본 제품의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5번 원료:** (일용)향료, 제품 중 사용된 향료는 IFRA 증서 요건에 부합하며 부록4를 참조한다.

**6번 원료:** 페녹시에탄올,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표4 화장품 사용 가능한 방부제 규정에 따르면, 페녹시에탄올의 사용 한도는 1.0%[1]다. 해당 원료의 첨가량은 xxx%로 요건에 부합한다. 본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n번 원료:** 구연산, “화장품안전기술규범” 표3 사용제한 성분 규정에 따르면, 알파 하이드록시산 및 그 염류와 에스테르류의 사용 한도는 총량 6%(산으로 계산)이고, pH 3.5 이상(사용 후 씻어내는 모발용 제품 제외)[1]이다. 해당 원료의 첨가량은 xxx%이고, 본 처방의 알파 하이드록시산류 원료의 총 첨가량은 xxx%(산으로 계산)로 요건에 부합한다. 본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적용 위험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1.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

본 제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과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의 요건에 따라 현재 과학 인지 수준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투입, 생산 과정 중 발생하거나 유입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제품의 생산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며, 생산 과정과 제품 포장 재료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한다.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 물질은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고, 원료가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불순물이다. 잔류한 미량의 불순물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품 안전성 위험물질 위해 식별표는 표3을 참조한다.

**표3 화장품 중 안전성 위험 물질 위해 식별표**

| **표준중문명칭** | **함유할 수 있는 위험물질** | **비고** |
| --- | --- | --- |
| 물 | 없음 | / |
| PE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 다이옥산과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다이옥산: 화장품 완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제1장 “개괄” 중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한도값”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30mg/kg 미만이어야 한다. 본 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1mg/kg 미만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SCCS)의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에 관한 의견[33]에 따르면 농도 0.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에 존재해도 안전하다. 본 제품에서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이 미검출되어(6.0mg/kg 미만, 즉 0.0006% 미만) 안전성 위험이 없다. 부록2를 참조한다. |
| PEG-150 다이스테아레이트 | 다이옥산과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다이옥산: 화장품 완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제1장 “개괄” 중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한도값”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30mg/kg 미만이어야 한다. 본 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1mg/kg 미만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SCCS)의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에 관한 의견[33]에 따르면 농도 0.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에 존재해도 안전하다. 본 제품에서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이 미검출되어(6.0mg/kg 미만, 즉 0.0006% 미만) 안전성 위험이 없다. 부록2를 참조한다. |
| (일용) 향료 | 없음 | / |
|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 없음 | / |
| 소듐 클로라이드 | 없음 | / |
| 벤조산나트륨 | 없음 | / |
| 페녹시에탄올 | 다이옥산과 페놀 | 다이옥산: 화장품 완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제1장 “개괄” 중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한도값”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30mg/kg 미만이어야 한다. 본 제품에서 다이옥산의 잔류 농도는 1mg/kg 미만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 화장품 등록 검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페놀: 일본 화장품 표준[34]이 사용을 허용한 방부제 중에서 페놀의 화장품에서의 한도는 0.1g/100g(1000μg/g)이다. 본 제품에서 페놀이 미검출되어(0.20μg/g 미만) 해당 요건에 부합하여 본 원료의 안전성 위험이 없고 인체 건강에 잠재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측정 보고서는 부록2를 참조한다. |
| …… | …… | …… |
| 구연산 | 없음 | / |

그 밖에, 해당 제품의 검사 보고서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다이옥산 검사 결과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표2 “화장품 중 유해물질 한도”의 한도값 요건에 부합함을 나타낸다.

1.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본 제품은 샤워 젤로 사용 시 몸, 손, 발에 바르며 사용 후에 물로 씻어낸다. 매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표기된 경고문:

주의: …….

1. **안전성 평가 결론**

본 제품은 샤워 젤(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사용 시 몸, 손, 발에 바르며 사용 후에 물로 씻어낸다. 매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노출 방식은 경피 흡수로 제품 특성에 근거하여 본 제품의 노출 평가는 경피 경로를 고려한다.

제품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1.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성분은 본 제품 농도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2.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물질 측정 및 평가 결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제품 방부 효능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요건에 부합하며 부록을 참조한다.
4. 미생물 검사 결과, 해당 제품 미생물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
5. 유해물질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
6. 제품의 안정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요건에 부합하며 부록을 참조한다.
7. 제품의 포장 호환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는 요건에 부합하며 부록을 참조한다.
8. 본 제품의 급성 눈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 이며, 급성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는 “자극성 없음”이다. 피부 감작성 시험 결과는 “피부 감작성이 관찰되지 않음”이며, 피부 광독성 시험 결과는 “피부 광독성 보이지 않음”이다. 본 제품은 인체에 눈과 피부 자극성 위험이 없으며 피부 감작성 위험과 광독성 위험이 없다.
9. 처방 중 각 성분 사이에서 유해한 상호작용의 발생이 예측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화장품 중 각 원료와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화장품 미생물과 유해물질의 측정 결과, 안전성 시험 평가 결과 및 제정한 위험 통제 조치 또는 권고사항 등과 종합하여 명확한 제품 안전성 평가 결론을 도출하였고 제품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는 현재 인지 수준을 바탕으로, 기존 과학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객관성, 진실성, 정확성을 서약하고, 과학성, 추적성 요건을 충족하여 제품의 품질 안전에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발견되거나 출시 후 부작용 모니터링 데이터가 발생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 또는 제품에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허가인, 등록인은 적절한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한다.

1.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

평가자:

날짜:

주소:

1. **안전성 평가자 약력**

|  |  |  |  |
| --- | --- | --- | --- |
| 성명 |  | 성별 |  |
| 학위 |  | 전공 |  |
| 기관 |  | | |
| 개인약력 |  | | |
| 종사업무약력 |  | | |
| 교육 이력 |  | | |

1. **참고문헌**
2.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 2015년 제268호
3.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2021년판)” 발표에 관한 공고, 2021년 제62호
4. 중국 식품약품 검정연구원, 중검원 “국제권위 화장품안전성 평가데이터 색인”과 “기출시 제품 원료 사용 정보” 발표에 관한 통지, 발표일: 2024년 4월 30일
5. 유럽 의회와 이사회 법규(EC) No.1223/2009
6. 일본 화장품 표준,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제331호(2000년 9월)
7. **부록**
8. 향료의 IFRA 증서
9. 제품의 미생물, 유해물질, 다이옥산의 측정 보고서(화장품 등록검사보고서 GFxxxxxx 참조), 제품 중 이차알킬아민과 니트로사민(N-니트로소화합물)의 검사 보고서(xxxx), 제품 중 다이에틸렌 글라이콜과 잔류 농약의 검사 보고서(xxxx), 제품 중 페놀의 검사 보고서(xxx)
10. 제품 방부 효능 평가 또는 시험 결과
11. 제품의 안정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
12. 제품의 포장 호환성 평가 또는 시험 결과

부록3

**화장품 방부 효능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샤워 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 관련 연구(구체적인 참고문헌 명칭과 번호: xxxxxx)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의 방부 효능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통해 표준작업절차(SOP) 수립(자체 방법 명칭과 번호: xxxxxx)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균주, 중화제,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 화장품 방부 효능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품 특성, 제품 처방 및 제품 포장 등과 종합하여 연구와 판단을 했다. 기존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본 제품의 방부 효능은 양호하며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미생물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다.

☐ 제품 특성, 제품 처방 및 제품 포장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연구와 판단을 한 결과,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본제품은 미생물 위험이 낮은 제품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미생물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으므로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1. **서약**

당사는 본 제품의 방부 유효성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

부록4

**화장품 안전성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샤워 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 관련 연구(기업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참고 문헌 명칭과 번호)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의 안정성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거쳐 표준을 이미 수립한 작업 규정(기업이 내부 표준작업절차(SOP) 명칭과 번호 제공)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방법, 시험 관찰 사항,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화장품 안정성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품 특성과 제품 처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판단을 종합한 결과, 기존 지식 수준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저장 조건에서 본 제품의 안정성은 XX개월까지 도달할 수 있다.
3. **서약**

당사는 본 성명서에 포함된 안전성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

부록5

**화장품 포장재 호환성 시험 평가 결과**

1. **제품 명칭:** xxxx 샤워 젤
2. **시험 평가 근거:** (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체크하며, 복수 선택 가능)

☐ 기술 규범, 기술 지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국제 표준 등을 근거로 실시한 관련 연구(구체적인 참고 문헌 명칭과 번호: xxxxxx)

☐ 자체 시험 또는 평가 방법을 이용한 화장품과 포장재 호환성 연구 보고서. 방법은 기업 검증을 거쳐 이미 수립한 표준작업절차(SOP)(자체 방법 명칭과 번호: xxxxxx)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 과정과 결과 약술:** (시험 시작일 및 종료일, 시험 샘플, 시험 방법, 시험 관찰 사항, 시험 결과 등 내용 서술 포함)
2. **평가 결과:** 기존 제품 포장재의 호환성 데이터를 기존의 지식 수준을 토대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평가한 결과, 이 제품과 포장재 간의 직접 접촉하는 호환성 위험은 통제 가능하며, 화장품이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다.
3. **서약**

당사는 본 성명서에 포함된 평가 과정 및 평가 결론의 과학성, 정확성 및 진실성에 책임진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 (서명 날인)

20XX년 XX월 XX일